

# 대한관세법인

## NEWS LETTER

2018.JULY





## 과다·과소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로 해결!

7월 1일부터 소요량 산정방법과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시행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원재료의 양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환급금을 결정하려면 소요량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기업 입장에서는 소요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과다·과소환급이 발생했으며, 장기간 계산 오류 등에 따른 고액의 과다환급금 추징도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했다며,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에 대한 소요량 산정의 편의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소요량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소요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서면심사(필요시 현장 방문)를 통해 소요량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통지 결과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업체의 동일 물품은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추징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 원재료의 종류와 양, 생산공정 등이

**변경되지 않으면 간이하게 서류 확인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효기간 갱신 등에 따른 민원 불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정한 소요량을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량 제도에 대한 규정 미숙지 및 과다환급 추징에 대한 부담 등으로 환급을 포기하는 업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설명회 개최※

- 7. 5(목) 14:00~16:00 대구본부세관 402 호
- 7. 6(금) 10:00~12:00 부산본부세관 4 층 강당
- 7.10(화) 14:00~16:00 인천본부세관 본관 5 층 대강당
- 7.11(수) 14:00~16:00 광주본부세관 3 층 세미나실(2)
- 7.12(목) 14:00~16:00 서울본부세관 10 층 대강당

\*자세한 사항은 각 본부세관 환급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량 산정방법이란?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와 양을 의미하며, 환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간이정액환급 이외에 개별환급에 의하여 환급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 소요량 산정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국립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하는 '기준소요량'에 따랐으나 현재는 '자율소요량제도'를 도입하여 환급신청자가 자율적으로 당사에 맞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관할세관에 신고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요량 산정방법에는 다음의 6 가지가 있다.

<b>단위실량</b>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을 분해하여 재거나 수출물품 1 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실면적이나 부품내역서상의 실량 등을 세어서 산정
<b>단위설계소요량</b>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제조사양서에 있는 원재료 중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소요량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에 최적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손모량을 합친 소요량임
<b>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b>	수출건별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불량품 등에 소요된 원재료의 사용량을 제외한 소요량으로 산정하는 방법
<b>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b>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 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
<b>1 회계년도 단위소요량</b>	1 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 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
<b>위탁건별 총 소요량</b>	수출물품의 생산에 위탁한 업체가 생산업체(수탁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생산업체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



## “美·中 무역전쟁 불똥?”

### 中, 우리 스티렌에도 반덤핑 최종판결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한 무역조치를 쏟아내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타깃으로 발표한 스티렌 반덤핑관세 부과 판결에 한국産 제품이 포함됐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6월 23일 중국정부가 1년 만에 한국·미국·대만産 스티렌에 반덤핑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HS 코드 2902.5000으로 가전제품 케이스·부품, 자동차 내·외장재,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화학 원료다.

중국정부는 올 2월 13일 한국·미국·대만産 스티렌이 중국시장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조사대상에 보증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최종판결 결과를 보면 중국정부는 우리나라와 대만 업체의 반덤핑세율을 예비판정보다 인하였다. 이들은 예비판결에서 우리 기업에 7.8~8.4%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6.2~7.5%로 낮춘 것이다.

반면 미국 기업의 반덤핑관세율은 예비판결보다 50~500%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이번 판결에서 한국·대만産의 반덤핑세율은 낮아졌으나 최혜국세율의 3배 수준”이라며, “예비판결 후 對中 수출과정에 부과한 보증금이 최종판결에 따라 정산된 반덤핑관세보다 많은 부분은 기업에 반환해야 하고, 2월 13일 ~6월 12일 사이 스티렌을 수출한 우리 기업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반덤핑 예비판결 및 최종판결 비교

구분	부과대상기업	예비판결	최종판결
한국	한화토탈/여천NOC	7.8%	6.2%
	LG화학/SK화학	8%	6.6%
	롯데케미칼/기타한국기업	8.4%	7.5%
대만	대만화학성유 주식유한회사	5%	3.8%
	기타대만기업	5%	4.2%
미국	Lyondal Chemical Company	9.2%	13.9%
	INEOS Styrolution America LLC/Americas Styrenics LLC	9.6%	13.9%
	Westlake Styrene LLC	10.7%	13.7%
	All Others	10.7%	55.7%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제공



## 10 월 1 일부터 '합법 벌채된 목재'만 수입할 수 있어요!

올 10 월 1 일부터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에 대한 서류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 임업통상팀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산림 파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 10 월 1 일부터 '불법 목재 교역 제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Seneca Creek Associates & Wood Resources International'의 2004 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목재제품의 5~10%가 불법 벌채된 것으로 추정하며, 영국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2010 년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1 억m<sup>3</sup>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벌채가 산림 파괴와 기후 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가운데 최근 APEC 에서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불법 벌채 교역 제한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은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목재 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불법 벌채된 목재의 수입 및 유통 제한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로 수입한 원자재를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합법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목재류 수입자는 관세청에만 수입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했으나, 10 월 1 일부터는 동법 제 19 조의 2(수입신고)에 따라 산림청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에 대한 서류검수도 받아야 한다.

수입신고 대상품목 및 HS 코드는 원목(HS 4403), 제재목(HS 4407), 방부목재(HS 4407), 난연목재(HS 4407), 집성재(HS 4407), 합판(HS 4412), 목재펠릿(HS 4401~31)이다.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 ▲그 밖에 합법 벌채됐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 등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보한 후 수입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고시 발표 예정) 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상업송장을 첨부해 수입신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서류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수입업자는 해당 서류를 포함해 세관장에게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후 통관할 수 있다.





## EU 도 관세장벽 높인다 철강 수입감시제도 설명문 발표

KOTRA 브뤼셀무역관은 “6월 12일 EU 집행위원회가 역외국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 수입감시제도에 대한 설명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의 역외국이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EA 국가를 제외한 모든 非 EU 국가를 말한다.

EU 집행위는 “철강·알루미늄 산업 내 생산과잉 및 불공정 경쟁 문제 해결을 위해 역외産 제품 수입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의 이해 부족으로 설명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U는 2016년부터 철강에, 2018년부터 알루미늄에 수입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 시행에 따라 역외産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체는 회원국 당국에 감시서류(Surveillance document)를 요청하고 양식을 발급받아야 한다. EU 집행위는 해당 서류를 취합해 역내 수입 추이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KOTRA 브뤼셀무역관은 “EU의 수입감시제도는 앞으로 추가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염두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수입 급증이 확인되는 경우 긴급 수입규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6 월 23 일부터 '세관 토요일 오전 근무제' 폐지

**6 월 23 일부터 세관 통관부서의 토요일 오전 근무제가 사라지고 임시개청 체제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원활한 對民 행정을 위해 6 월 23 일부터 '세관 토요일 오전 근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05 년 7 월부터 '행정기관 주 40 시간 근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관의 토요일 오전(09:00~13:00) 정상근무 제도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근무 형태는 토요일 오전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어 통관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어렵게 하고, 급증하는 업무량에 따른 주중 업무 처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는 6 월 23 일부터 원활한 對民 행정을 위해 세관 통관부서의 토요일 오전 정상근무를 폐지하고, 상시 임시개청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요일 오전 통관·보세운송 물량이 있을 경우 다른 공휴일과 같이 미리 임시개청을 통보하면 해당 수출입물품이 토요일 오전에도 차질 없이 통관·운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인천공항 지역 통관부서는 변동사항 없이 기존처럼 24 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참고로 임시개청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긴급히 수입통관을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세관 임시개청을 신청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목재제품, 통관 전 미리 규격·품질검사 받으세요!

수입 목재제품의 불량·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연말까지 통관 전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단속이 이뤄진다.**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정부가 국내 생산 및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산림청 목재산업과는 목재 수입·유통업자 등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 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에 따라 통관 전 미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목재제품이 수입·통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앞서 통관된 제품이나 국내 생산 제품도 규격·품질 단속을 계속 실시한다며,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 ▲규격·품질검사 의뢰 방법, ▲단속 절차 및 벌칙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동법 제 20 조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한 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할 때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재제품은 ▲제재목(製材木), ▲방부목재(防腐木材), ▲난연목재(難燃木材),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集成材),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섬유판(纖維板),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목질바닥재, ▲목재펠릿(wood pellet), ▲목재칩(wood chip), ▲목재브리켓(wood briquet), ▲성형목탄(成型木炭), ▲목탄 등 15 개 목재제품이다.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청장이 지정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 의뢰하며, 통지된 결과에 기초해 규격·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검사 유효기간은 결과통지서 발급 후 3 년이다.

한편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 벌금을,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중앙관세분석소, WCO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

중앙관세분석소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의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됐다.

지역관세분석소란 해당 지역의 관세분석기술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WCO 산하 지역기구를 말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달 28 일~30 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 132 차 WCO 총회에 참석해 관세청의 중앙관세분석소를 WCO 아·태지역 관세분석소로 지정하는 양해각서(MOU)를 WCO 사무국과 체결했다.

###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 러시아, 멕시코에 이어 4 번째로 지역관세분석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관세청 산하 중앙관세분석소는 1980 년에 설립되어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 통관요건 등과 관련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물리적·화학적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이다.

최근 WCO 로부터 품목분류의 논란이 있는 물품을 의뢰받아 분석을 수행하거나, 아·태지역 관세당국의 분석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WCO 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WCO 로부터 기관의 업무 전문성, 프로세스 및 시설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받게 되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WCO 최초로 지역훈련센터(2010 지정), 지역정보연락사무소(2011 설립)와 지역분석소의 3 개 지역기구를 함께 유치·운영하는 국가가 되었다.

관세청은 이번 약정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품목분류와 관련한 글로벌 정책 결정 또는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일반수출' 신고 건 '원상태·계약상이 수출'로 정정 가능**

**수출신고 시 '일반수출'로 신고한 건을 '원상태·계약상이 수출'로 정정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한다.**

관세청은 수출신고와 'FTA 수출활용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월 5일 입안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신고 시 자동수리·화면심사 방법으로 일반수출 신고한 건을 원상태(72)·계약상이(73)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세관직원 확인 없이 자동수리·화면심사된 경우는 정정이 불가해 관세환급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수리·화면심사 경우도 정정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거래구분' 정정을 전면 허용해 수출업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되 정정에 대한 오류점수를 기존 4점에서 100점으로 상향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출신고 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신고해 사후 정정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신고오류에 따른 오류점수를 차등화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정정기간과 상관없이 오류점수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30일 이내에 정정한 경우는 오류점수를 면제하고 30일을 초과해 정정한 경우는 4점의 오류점수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에 따라 국가통계인 'FTA 수출활용률'을 산출하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오류점수를 부과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원산지결정기준 변경 안내

7 월 1 일부로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변경사항

1) 일반특혜 원산지증명 신청 원산지결정기준 코드 추가

- 코드값(코드명칭) : E(호 변경)

2) 일반특혜 APTA 원산지증명서 출력 양식 변경

- 5 번란 HS 4 단위 표시되던 것을 **HS 6 단위 표시되도록 변경**

- 8 번란 **원산지결정기준이 'E' 인 경우 'E CTH' 로 표시**

- 뒷면 5 번란, 8 번란 양식 최종본 기준으로 변경

※ 세부 변경 내용은 첨부 참조(샘플\_XML, Schema 변경사항 없음)

○ 시행일자 : 2018. 7. 1.(일)

#변경된 APTA 양식 샘플

SAMPLE CERTIFICATE OF ORIGIN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Issued in ..... (Country)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5. Tariff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for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u>on the basis of control</u>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중국 내 붉은불개미 분포지역(14 개 지역)의

### 수입식물(32 개 품목) 검역강화 안내

최근 평택항 및 부산항에서 연이어 붉은불개미가 검출되어, 동해충의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복건성 등 붉은불개미 분포지역(14 개 지역)에서 수입된 수입식물(32 개 품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역이 강화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지역(14) : 복건성, 강서성, 광둥성, 광시장족자치구, 해남성,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호남성, 절강성, 귀주성, 강소성, 텐진시, 홍콩

나. 대상품목(32) : 코코넛껍질, 우드펠릿, 목화씨(피)펠릿, 사탕무우펠릿, 캐슈너껍질, 귀리건초, 연맥검초, 주정박, 드라세나묘목(삽수포함), 고무나무묘목, 폴리시아스묘목, 용설란묘, 레우코스페르움절화, Ozothamus 절화, 핑거루트, 귀리, 옥수수, 동부(콩), 바나나, 배추, 파인애플, 망고스틴, 건아몬드, 건캐슈넛, 대나무, 나왕각재, 알바지아각재, 흑단각재, 아카시아나무각재, 코코넛섬유, 벌통, 가구

다. 검역강화 : 수입자의 자진소독 또는 자진소독 미실시 화물은 수입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및 현장검역 수량 2 배 확대



## 2018 년도 하반기 적용 세율 및 관련규정 반영 안내

올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됨에 따라 2018 년도 7 월 1 일부터 세율 변동이 있는 관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EU FTA 협정 하반기 관세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제 28949 호, 2018.6.12., 일부개정]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